

고양장항 A-1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5.05.21.]

1. 건설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1로 21(장항동) 고양장항 A-1BL 행복주택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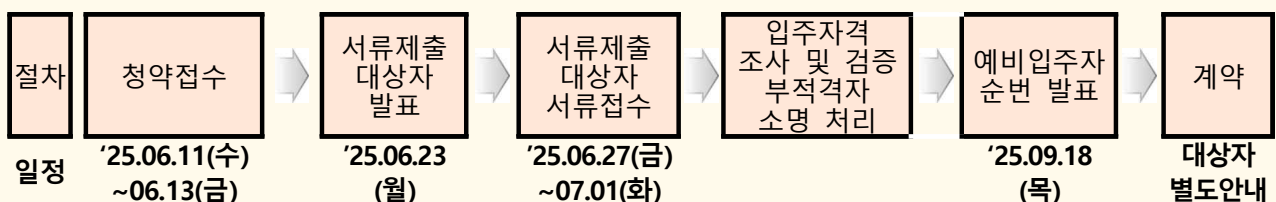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05.2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 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공고는 **2023.10.20. 최초 모집공고한 행복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순위	입주자격 완화 내용		
1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일반조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1인	120% 이하
		2인	11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 기간요건		
	공급대상		일반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6세 이하(태아 포함)	
2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완화조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1인	140% 이하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40% 이하
		3인 이상	130% 이하

	■ 기간요건	공급대상		완화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9세 이하(태아 포함)
3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계층		완화조건
		전체		150% 이하
		■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 자격완화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 제2항에 따라 **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후순위로 예비입주자 순번이 결정되며, 부여받으신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고양장항 A-1BL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5.2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계층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확인**
 - ① 대학생 계층 ② 청년 계층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1960.05.21. 이전 출생**)
 -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공급대상(계층) 및 순위(입주자격완화 순위 및 일반공급 순위)에 적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공급형별 모집하지 않는 공급대상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대상 선정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오니,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어플 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신청 순위와 공고일(2025.05.21.) 기준 등본상 주소지의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됩니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현장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으며 혼잡이 예상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일시 : 2025.06.11.(수) 10:00 ~ 15:00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현장접수장소 : LH 고양사업본부 1층 계약실(경기도 고양시 지축로 7)
- 현장접수 시 준비사항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해당하는 서류(21~25p 제출서류 항목 참조)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함

※ LH 고양사업본부는 현장접수처로만 사용되고 현장접수 외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문의는 LH 대표콜센터(☎1600-1004)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입주자격 완화 내용

자격 요건	공급 대상	가구 원수등	입주자격완화 순위			비고
			1순위 (일반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완화조건)	
소득 요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1인	120% 이하	140% 이하	15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2인	110% 이하	130% 이하	15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30% 이하	140% 이하	15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130% 이하	150% 이하	
기간 요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태아포함)	9세 이하 (태아포함)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공급형별	공급대상(계층)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금회모집 예비자수 (465호)	세대 당 계약면적(m²)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예 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21A	대학생	320	9	140	21.90	12.5515	2.4405	14.6674	51.5594	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5.12 (예정)						
	청년(소득 無)																	
	청년(소득 有)																	
	주거급여수급자	60	-	40						20								
21AS	고령자 (주거약자용)	60	-	55														
26A	청년(소득 無)	142	16	30	26.90	15.4171	2.9977	18.0162	63.3310	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5.12 (예정)				
	청년(소득 有)									20								
	주거급여수급자	46	3	15														
36A	청년(소득 無)	60	43	10	36.87	21.1312	4.1089	24.6936	86.8037	1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5.12 (예정)		
	청년(소득 有)									10~1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	-	35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71	3	130	44.98	25.7793	5.0126	30.1253	105.8972	10~14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25.12 (예정)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40	2	10						20								

■ 임대조건

공급 영별	공급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천원)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21A	대학생	32,300	1,615	30,685	134,580	(+) 6,000	38,300	99,580
	청년(소득 無)					(-) 27,000	5,300	213,330
	청년(소득 有)	34,200	1,710	32,490	142,500	(+) 7,000	41,200	101,660
						(-) 28,000	6,200	224,160
	주거급여수급자	28,500	1,425	27,075	118,750	(+) 3,000	31,500	101,250
						(-) 23,000	5,500	185,830
21AS	고령자 (주거약자용)	36,100	1,805	34,295	150,410	(+) 9,000	45,100	97,910
						(-) 30,000	6,100	237,910

공급 형별	공급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천원)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26A	청년(소득 無)	39,100	1,955	37,145	162,910	(+) 11,000	50,100	98,740
						(-) 32,000	7,100	256,240
	청년(소득 有)	41,400	2,070	39,330	172,500	(+) 12,000	53,400	102,500
						(-) 34,000	7,400	271,660
	주거급여수급자	34,500	1,725	32,775	143,750	(+) 7,000	41,500	102,910
						(-) 29,000	5,500	228,330
36A	청년(소득 無)	54,740	2,737	52,003	228,080	(+) 22,000	76,740	99,740
						(-) 46,000	8,740	362,240
	청년(소득 有)	57,960	2,898	55,062	241,500	(+) 24,000	81,960	101,500
						(-) 48,000	9,960	381,5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4,400	3,220	61,180	268,330	(+) 27,000	91,400	110,830
						(-) 54,000	10,400	425,830
44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78,800	3,940	74,860	328,330	(+) 33,000	111,800	135,830
						(-) 66,000	12,800	520,830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74,860	3,743	71,117	311,910	(+) 32,000	106,860	125,240
						(-) 62,000	12,860	492,740

- 예비자 모집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 공가 추가 발생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후순위로 예비입주자 순번이 결정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입주 가능한 공가가 있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개별안내)하므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고양장항 A-1BL 행복주택 단지의 주차면수(지상+지하)는 총 840대입니다.
- 21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A : 대학생·청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26A : 청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36A : 청년계층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44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계층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44A 주택형 건설호수 중 1호는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수 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일부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며,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 내 카세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5.2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㉓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㉓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2순위), 150%(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7인	10,435,124원 이하	100%	12,522,149원 이하	120%	15,652,686원 이하	150%
8인	11,137,162원 이하	100%	13,364,594원 이하	120%	16,705,743원 이하	150%

* **[일반조건(1순위)]** 9인이상의 가구는 8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② 일반공급 순위

1순위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인 자
2순위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21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청년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5.2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㉔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④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㉔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05.22 ~ 2006.05.21)

①-④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2순위), 150%(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7인	10,435,124원 이하	100%	12,522,149원 이하	120%	15,652,686원 이하	150%
8인	11,137,162원 이하	100%	13,364,594원 이하	120%	16,705,743원 이하	150%

* [일반조건(1순위)] 9인이상의 가구는 8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5,4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 유무 여부를 판단함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미제출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② 일반공급 순위

1순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인 자
2순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21A형의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5.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㉓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㉓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㉓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2018.05.22. 이후 출생)

[(완화조건) 9세 이하(2015.05.22. 이후 출생)]의 자녀를 둔 사람(태아포함)

①-㉓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㉓ (한부모가족) 6세 이하(2018.05.22. 이후 출생) **[(완화조건) 9세 이하(2015.05.22.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완화조건) 12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일 것

※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완화조건) 13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일 것

※ 단,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완화조건) 13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완화조건) 14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일 것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7인	10,435,124원 이하	100%	12,522,149원 이하	120%	15,652,686원 이하	150%
	8인	11,137,162원 이하	100%	13,364,594원 이하	120%	16,705,743원 이하	150%
맞벌이 신혼부부	2인	7,120,104원 이하	130%	7,667,804원 이하	140%	8,215,505원 이하	150%
	3인	9,152,368원 이하	120%	9,915,065원 이하	13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10,293,706원 이하	120%	11,151,514원 이하	13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10,837,258원 이하	120%	11,740,362원 이하	13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11,679,703원 이하	120%	12,653,012원 이하	130%	14,599,629원 이하	150%
	7인	12,522,149원 이하	120%	13,565,661원 이하	130%	15,652,686원 이하	150%
	8인	13,364,594원 이하	120%	14,478,311원 이하	130%	16,705,743원 이하	150%

* **[일반조건(1순위)]** 9인이상의 가구는 8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미제출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2인 가구 13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단,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3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140% 이하)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②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3-4. 고려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5.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60.05.21 이전 출생)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120% 이하(2순위), 150% 이하(3순위)]** 이하인 사람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2순위), 150%(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1순위)		완화조건 (2순위)		완화조건 (3순위)	
1인	4,317,797원 이하	120%	5,037,430원 이하	140%	5,397,246원 이하	150%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8,215,505원 이하	15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11,440,460원 이하	15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12,867,132원 이하	15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13,546,572원 이하	15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14,599,629원 이하	150%
7인	10,435,124원 이하	100%	12,522,149원 이하	120%	15,652,686원 이하	150%
8인	11,137,162원 이하	100%	13,364,594원 이하	120%	16,705,743원 이하	150%

* **[일반조건(1순위)]** 9인이상의 가구는 8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33,7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

※ '고려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5.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 모집공고일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
(인터넷접수) ‘25.06.11(수) 10:00 ~ 06.13(금) 17:00 ※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한 24시간 가능	‘25.06.23(월)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인터넷(PC·모바일)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25.06.27(금) 10:00 ~ 07.01(화) 17:00 [등기우편 접수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임대공급운영팀 고양장항 A-1BL 담당자 ※ ‘25.07.01(화) 소인분까지 유효	‘25.09.18(목) 17:00 이후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ARS(1661-7700)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입주 가능한 공가가 있거나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체결 안내를 받을 수 있음
(현장접수) ‘25.06.11(수) 10:00~15:00 [현장접수 장소] LH 고양사업본부 1층 계약실 (경기도 고양시 지축1로 7)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별도게시

- 인터넷 청약신청은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어플 명칭: LH청약플러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며, 적격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5.06.23(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5.06.27(금) ~ 07.01(화)]에 필요서류를 인터넷(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입주자격 부적격 처리)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등기우편 발송 주소는 [(11787)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임대공급운영팀 고양장항 A-1BL 담당자]입니다.
 * 공고 이후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LH청약플러스(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 여부는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 C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왼쪽 하단 『임대주택』 클릭 → 왼쪽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어플 → 오른쪽 상단 메뉴 클릭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예시. 조회된 원천기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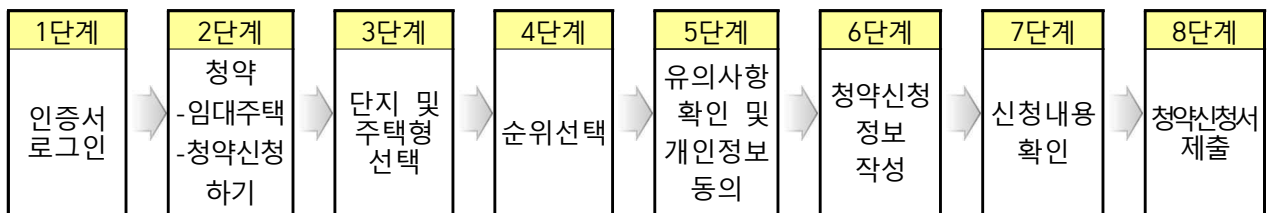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인터넷 청약신청(PC·모바일) 시 공통 유의사항]

- 청약신청 절차(PC와 모바일 신청방법이 동일함)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신청 1~2일 전에 청약접수 시 사용할 PC 또는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청약신청에 필요한 신청순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 청약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06.11(수) 10시부터 '25.06.13(금) 오후 17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로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및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이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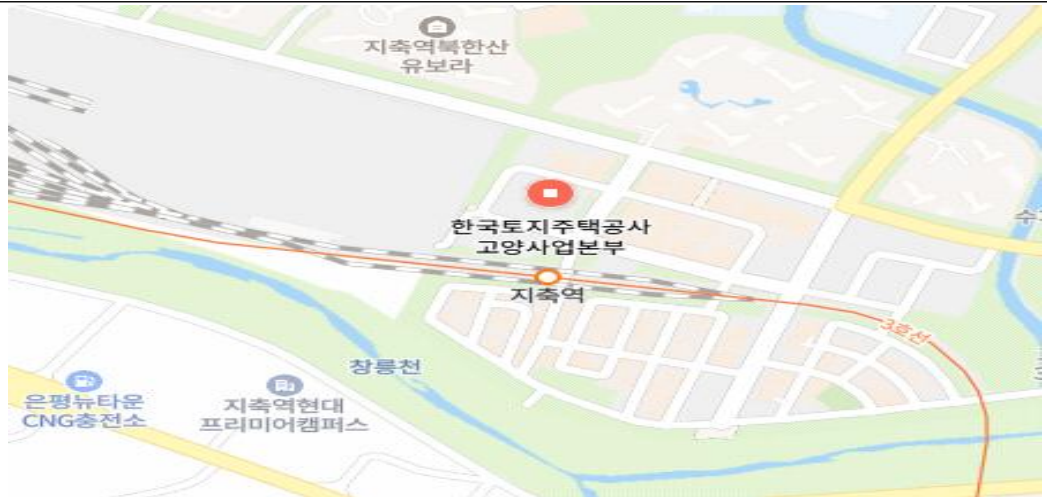
■ 유의사항

-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5.06.11(수) 10시부터 '25.06.13(금) 오후 17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모바일 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어플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 납부 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청약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 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일자는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자에 따라 [5. 신청서류]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순위와 공고일(2025.05.21.) 기준 등본상 주소지의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됩니다.
- 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자 과다 밀집시 번호표 배부 후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 좌석 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고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접수 가능한 재방문 시간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현장방문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시 신청 불가).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므로,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현장접수 안내



일 시	2025.06.11.(수) 10:00~15: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 소	LH 고양사업본부 (경기도 고양시 지축1로 7)
교통편	3호선 지축역 2번 출구 (도보 2분)

※ 고양장항 A-1BL 행복주택은 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담당하며, LH 고양사업본부는 현장접수 장소로만 사용하므로 현장접수일 외에는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안내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6.23(월)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 확인방법
 - P C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왼쪽 하단 『임대주택』 클릭 → 왼쪽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어플 → 오른쪽 상단 메뉴 클릭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우리 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인터넷(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 (① 온라인 제출 ② 등기우편 제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① 온라인서류제출 (전자파일업로드)	• 온라인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어플 →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온라인 서류제출 이용 시 상기에 언급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우편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5.07.01)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격 부적격 처리됩니다. • [발송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LH 임대공급운영팀 고양장항 A-1BL 담당자

■ 온라인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PC·모바일)

• (접속방법) 온라인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어플(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어플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는 경우는 서류 접수가 불가합니다. ※ LH청약플러스 어플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접수는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5.07.01)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본,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 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어플)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 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05.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하여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O) , 123456-1***** (X)]

※ 추가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당시 등록하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며, **연락불가로 인한 서류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접수 시점에 제출)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위임장 양식 : 모집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1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각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2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등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 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1통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자본 : 출자증서 사본 ※ 현장 신청의 경우 해당 사항 있을 시 신청접수 시 제출 필요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양식4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모집공고문 첨부파일의 확인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양식5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모집공고문 첨부파일의 확약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 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5.21.)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5.21.)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양식6)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청 년 계 층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지방고용노동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완화기준의 경우 7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해당 학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병무청

신 혼 부 부 계 층	신혼부부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양식7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양식7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한 아래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표등본 -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고령자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주거급여수급자	(필수 제출)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6.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025.09.18.(목) 17:00 이후 발표]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정받은 순번을 확인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 확인방법 : 임대주택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또는 당첨/낙찰자 명단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계약안내[추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입주 가능한 공가 주택이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가능한 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안내 별도 진행 예정)**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입주자 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 주택 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각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 수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또는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여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개인정보변경에서 직접 변경하시거나 또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추후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 순위)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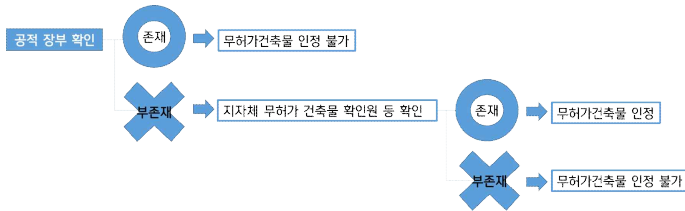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 소명방법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td>10년</td></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td>20년</td></tr> </tbody> </tabl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자격완화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기준에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803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
기타사항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 일반 사항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짐 일부라도 반입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는 출입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현장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 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됨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 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은 교육청 일정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음

■ 지구여건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06호)로 승인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3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이행, 지자체의견, 민원등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서남단에 유보지가 위치하며 유보지의 용도는 아직 미정이며 차후 결정됨
- 지구 밖 남측에 자유로 및 제2자유로가 운영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밖 북측에 방송영상밸리, 한류월드 사업지구가 위치하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밖 서측에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지구가 위치하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밖 남서측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지구 내 주유소가 들어올 예정임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 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 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행복주택)·행복주택·공공분양·통합공공임대·민간임대·민간분양·주상복합용지가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는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로 계획되어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성공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고양장항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수로는 해당 지자체의 소하천(장항천) 폐지 고시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되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세부 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시까지 공원조성 등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지구 외부 유입수의 수질에 따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 홍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 2개소 계획되어 있음

■ 단지외부여건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로 본 단지과 인접한 도로 및 보도는 공사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또는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는 장항천 / 동측에는 일산호수공원이 원거리에 위치함.
- 단지 주변에는 (잠정)가공전력인입에 따른 노상시설물인 가설고압전주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초등학교	초1	장항초	'24.09
중학교	중1	장항중(가칭)	미정
고등학교	고1	장항고(가칭)	미정

- 지구 내 공동주택 블록별 입주시기가 상이하여 해당블록 입주시점에 중·고등학교설립 및 개교가 어려울 수 있음.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음.

■ 단지내부여건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물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구조물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세대 등 입주예정자는 이사 전 이사 업체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람
- 상가 및 부대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03동은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임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보차도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이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무인택배보관함이 101~106동 지하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의자, 소파, 이동식가구 등 기타 부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에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량출입통제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 또는 주출입구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주차면수(지상+지하)는 840대이며, 단지내상가 주차장 4대는 별도임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인접세대 등에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지하1층기준)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7m(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은 2.5m), 지하2층 차량통로 높이는 2.3m(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은 2.1m)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및 배기팬 설치로 인하여 상층 및 주위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의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일반가구, 합성수지제창호, 알루미늄창호, 각종 타일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나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 및 PIT층에는 기계실, 펌프실, 저수조, 환풍, 환기팬,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 및 급탕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발전기 비상가동시 인근 통행로에 소음 및 매연이 발생 및 유입 될수 있으며, 인근동 입주민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및 전 동 옥탑층-지붕층에는 피뢰침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모듈)이 설치되며, 설치 여건상 각 동 집광판의 용량은 상이할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2층엔 관련기준에 의거 완속 24기, 1층엔 완속 17기 및 급속 2기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총 43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지하 주차장 각 층별 또는 동별 균형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입주 시 사업자 선정 이후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이는 총 주차대수에 포함됨 (급속 2기 : 자립형, 완속 41기 : 벽부형)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8항 제9항 및 제16조)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전기·통신용 케이블트레이(덕트) 및 강제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본 사업 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의한 법령에 의거 조명기구, 승강기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되는 승강기는 층수에 따른 속도 차이로 관련 기준에 의거 103·104·105동은 지상19층(105M/m) 및 101·102·106동은 지상 26~28층(120M/m)으로 설치됨
-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운행 및 승강기 기계실 기기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 호수별 입주에 따른 보안등 조도 차이로 인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자동차 전조등 불빛에 의해, 인근 동 저층 복도 센서등 조명기구가 작동될 수 있음
- 각 동 복도 센서등은 복도구조(길이)에 따라 적정 분배를 한 것으로 각 세대별 현관앞(중앙)에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렛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마감재 내역은 주택신청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에 면한 창호, 외벽 등은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됨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 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집수정 가동 등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입주자의 인테리어 임의시공에 따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복도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위에는 벽, 천장,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분진방지페인트 등 도장마감으로 시공될 예정임
- 욕실은 시스템(조립식) 욕실로 시공됨 (바닥 난방 미시공, 벽체가 흔들릴수 있음)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벽지 (도배)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모든 세대 타입의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뽐칠로 시공됨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주방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임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2.3m(발코니, 욕실 등 제외)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내 가구 구매시 실측이 필요함
- 21,26형 세대는 가구전용 신발장이 시공되며, 36,44형 세대는 신발장/현관창고 겸용 시스템 선반 등이 시공될 예정임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타일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열교환실, 펌프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열교환기실1 105동~106동 사이, 열교환기실2 101동주변, 펌프실 101동~102동 사이, 발전기실/ 전기실 105동 주변에 위치)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에 의거 차단성능인증서 보유 완충재가 적용됨
- 21형 세대는 발코니에 세탁기 수전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내부(샤워실 없음)에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청약 접수전 반드시 위치 및 사이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 세대 시스템욕실 내부 샤워부스에는 문짝, 칸막이 등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전기용량(규격)의 가전제품(전기쿡탑,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전기용량,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내 냉매매립 배관이 미설치되어 에어컨 설치 시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CCTV가 설치될 예정
- 세대 내 입주자 이동 동선에 따라 현관 센서등 조명기구가 작동될 수 있음
- 세대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식탁이 보편적으로 놓일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결정해서 시공하여 입주 시 위치 변경이 불가하며, 21형 세대는 설계기준 상 설치되지 않음
- 103동의 1~12층 100호(21AS-60호, 26AS-40호)에 주거약자를 위한 세대가 구성이 되며, 해당 세대에는 욕실통로센서등이 21AS는 벽부형, 26AS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세대 각 형별로 에어컨용 콘센트 설치높이가 상이함
- 전 세대 발코니의 조명기구는 천장형(최상층 제외)으로 설치됨
- 세대 내 분전반이 형별로 신발장 또는 현관창고 맞은편 벽체(경량)에 매입되어 있음

■ 일반 사항

-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책자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면의 환기구 및 창호 개폐가능 여부 등의 세부적인 표기는 생략되었음
- 본 단지는 일부구간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동통신중계장치는 102동, 104동, 106동의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기간사업자(SK 텔레콤, KT, LG텔레콤등)가 관리소와 협의 후 설치 예정
- 사회적기업은 근린생활시설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세대는 업무상 생활소음에 노출될 수 있음
- 출구에 캐노피가 설치 될수 있으며, 캐노피의 재질에 따라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됨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환기설비 및 제습기(지하2층만 해당)가 설치됨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세대는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배치를 위한 냉장고장이 별도 설치되지 않음
- 21형 세대는 소형냉장고, 벽걸이에어컨이 설치됨.
- 에어컨 배관구(세대당 상하2개소)는 단열재 및 석고보드가 타공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는 에어컨 설치시 직접 타공하여야 함.
- 각 평형별로 현관의 신발장 설치 개소 상이함
- 발코니에는 선홍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어 다소 소음이 날 수 있음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음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냉장고 설치부위에 급수배관 및 배수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 실내기 설치 위치가 평형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에어컨 및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음)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주택성능등급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소음	★
구조관련 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관련 등급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토·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톱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연온도조절장치 설치수준	★★
생활환경 등급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 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화재·소방 관련 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지붕(직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간접면)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수변전설비, LED조명, 승강기)
바닥(간접면)	적용	홈네트워크	적용 (친환경주택 성능미반영)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고양장항 A-1BL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420-82-00573)	대보건설(주) 대보실업(주) 대흥건설(주) 풍림건설(주) 주식회사 도아 대진공무(주) 종합전기(주) 메타넷디지털	-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건일씨엠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룩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룩스(lux)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2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시 안내**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별도 안내 예정**)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LH 공개해소 상담센터 1670-0003 (평일 09:00 ~ 18:00)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인터넷 청약	· PC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1.



경기북부지역본부